



2018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목 차 ◀◀◀

①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1. 농수산물수출정보(KATI)	1
2. 수출확대지원 컨설팅	2
3. 현지화 지원	3
② 수출품목육성·발굴	
4. 수출통합조직 육성	4
5. 선도조직 기반육성	5
6. 수출상품화 지원	6
7. 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7
8. 농식품 스타콜라보 마케팅	8
③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9. 수출전문단지 조직화 교육	9
10. 안전성조사	10
11. 선도유지제 지원	11
④ 통관 및 물류지원	
12. 수출물류비 지원	12
13. 항공공동물류활성화	13
14. 해외공동물류센터	14
15. 중국 콜드체인구축	15
16.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16
17.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17
18. 수출보험지원	18
19. 해외인증 등록지원	21
⑤ 현지 유통망 개척	
20.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24
21. 바이어 거래알선	27
22.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29
23.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30
24. K-Food Fair	31
25. 해외판촉행사 지원	32
26.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33
27. 바이어매칭 모바일웹	34
<참고> aT 지역본부, 해외지사 연락처	35



1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1. 농수산물수출정보(KATI)

개 요	○ 국내 유일의 농림수산물 수출정보 전문 서비스로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														
지원대상	○ 농수산물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어민,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등 모든 농수산물 수출정보 수요자														
지원분야	○ 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출입제도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각종 수출정보														
지원내용	○ 기본이용 카테고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서 비 스 내 용</th></tr> </thead> <tbody> <tr> <td>뉴스</td><td>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안전성 정보</td></tr> <tr> <td>품목</td><td>주요 품목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td></tr> <tr> <td>국가</td><td>주요 국가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td></tr> <tr> <td>제도</td><td>비관세장벽, 인증, 첨가물 등</td></tr> <tr> <td>자료</td><td>발간자료, 보고서 및 간행물, 카드뉴스 등</td></tr> <tr> <td>통계</td><td>월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정보</td></tr> </tbody> </table> ○ 해외시장맞춤조사 : 개별업체 희망정보를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뉴스	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안전성 정보	품목	주요 품목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	국가	주요 국가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	제도	비관세장벽, 인증, 첨가물 등	자료	발간자료, 보고서 및 간행물, 카드뉴스 등	통계	월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정보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뉴스	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안전성 정보														
품목	주요 품목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														
국가	주요 국가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														
제도	비관세장벽, 인증, 첨가물 등														
자료	발간자료, 보고서 및 간행물, 카드뉴스 등														
통계	월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정보														
이용방법	○ 농수산물수출정보 KATI - 홈페이지 및 모바일: www.kati.net - SNS 채널: (페이스북) www.facebook.com/2017KATI , (카카오톡 ID) kati ○ 해외시장맞춤조사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추진현황 및 계획	○ 최신 수출 정보 One-stop 제공 ○ 통관문제사례 DB구축 및 비관세장벽 이슈 제공 ○ 국가 및 품목 정보 제공														
담당부서	○ KATI 이용 - aT 수출정보부 조민지 사원(061-931-0879) ○ 해외시장맞춤조사 - aT 수출애로상담실(02-6300-1119)														

2. 수출확대지원 컨설팅

개 요	○ 국내 농식품업체 대상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수 기업은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수출업체는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확대 도모		
지원대상	○ 중소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대기업 제외) ○ AG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 대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구 분	지원분야	지원내용
	심층컨설팅	▶ 컨설턴트 그룹-개별기업간 장기간 컨설팅 수행 ① 수출첫걸음(초보기업) : 무역실무 능력 배양, 통관·검역,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취득 등 수출 필요조건 충족 등 국내 수출인프라 구축, 마켓테스트 ② 신시장개척(기수출업체) : 신규 해외 바이어발굴, 거래알선·체결, 유통망 입점, 샘플수출, 해외 통관·검역 등 시장개척	[장기 6개월 이내] ① 수출첫걸음 분야 : 컨설팅 비용의 80% 정부지 ② 신시장개척 분야 : 컨설팅 비용의 80% 정부지
		현장코칭	▶ 개별 전문위원-개별기업간 단기간 컨설팅 수행 ① 수출실무: 금융/보험, 라벨링/포장, 통관 검역, 물류효율화, 해외마케팅, 생산·품질관리, 신상품개발/상품화, 법률상담 등 ② 수출FTA활용 : 원산지 판정/증명,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록, 원산지 사후 검증 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 설치 보급
추진절차	○ 심층컨설팅		
	광고 ▶ 접수 ▶ 무료 기업 현장방문 진단 ▶ 컨설팅사 매칭 ▶ 수행계획서 작성 ▶ 수행계획서 심의 ▶ 자부담금 납입 ▶ 협약체결 ▶ 컨설팅 착수 ▶ 중간점검 ▶ 컨설팅 완료 ▶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 현장코칭		
신청방법	광고 ▶ 지원업체 신청 ▶ 상담 ▶ 업체 선정 ▶ 전문위원 매칭 ▶ 자부담금 입금 ▶ 컨설팅 수행 ▶ 만족도조사 및 완료점검		
	○ http://global.at.or.kr 또는 http://www.foodbiz.or.kr		
담당부서	○ aT 기업컨설팅부 전명희 과장(02-6300-1734)		

* 위 사업 지원내용은 향후 세부추진계획 수립 이후 변동가능



3. 현지화 지원

개 요	○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으로 해소 및 시장확대를 위한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 및 상품 분석·홍보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대상지역 : 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수출거점 19국 - (동아시아) 중국(홍콩 포함), 대만, 일본 - (동남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 등 - (기타) 미주(미국, 캐나다), EU(프랑스, 독일 등), 중동(UAE) ○ 지원방법 : 변호사, 통관 전문가 등 각국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원 추진 ○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비관세 장벽해소</td><td> • 현지법률·제도(계약, 관세, SPS 등) 관련 애로 해소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분야</th><th>지원(자문) 내용</th></tr> </thead> <tbody> <tr> <td>법률일반</td><td>- 계약서 법률검토, 현지법인 설립, 현지 노동법률 등</td></tr> <tr> <td>통관</td><td>- 수입가능 여부, 성분비율 등 통관검토, 관세 등 부가세 일반</td></tr> <tr> <td>SPS</td><td>- 식품 관련법령, 위생기준 조회 등</td></tr> <tr> <td>기타</td><td>- 기타 현지 비즈니스</td></tr> </tbody> </table> </td></tr> <tr> <td>성분 검사</td><td>• 현지 규정, 표준단위에 적합한 제품 영양성분 분석 및 검사 지원</td></tr> <tr> <td>라벨링 지원</td><td>•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 제작(등록) 지원</td></tr> <tr> <td>상표권 지원</td><td>•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사전상표검색 및 출원 대행 지원 * (신규) 마드리드 상표권 지원</td></tr> <tr> <td>중국 시험수출 One-stop 지원</td><td>• 대중국 시험수출물량 「통관 사전준비·물류·보관·마케팅」 단계적 시범지원</td></tr> <tr> <td>포장패키지 현지화</td><td>• 현지감각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td></tr> <tr> <td>바이어 특화지원</td><td> • 바이어 경영진단, 코칭 및 컨설팅 • 식품 위생검사비(사전검역 포함), 수입식품 등록비(갱신비) 지원 </td></tr> </tbody> </table> * 현지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장패키지 및 바이어 특화지원 사업은 수출업체가 아닌 해외 바이어만을 대상으로 함	구 분	주요 내용	비관세 장벽해소	• 현지법률·제도(계약, 관세, SPS 등) 관련 애로 해소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분야</th><th>지원(자문) 내용</th></tr> </thead> <tbody> <tr> <td>법률일반</td><td>- 계약서 법률검토, 현지법인 설립, 현지 노동법률 등</td></tr> <tr> <td>통관</td><td>- 수입가능 여부, 성분비율 등 통관검토, 관세 등 부가세 일반</td></tr> <tr> <td>SPS</td><td>- 식품 관련법령, 위생기준 조회 등</td></tr> <tr> <td>기타</td><td>- 기타 현지 비즈니스</td></tr> </tbody> </table>	지원분야	지원(자문) 내용	법률일반	- 계약서 법률검토, 현지법인 설립, 현지 노동법률 등	통관	- 수입가능 여부, 성분비율 등 통관검토, 관세 등 부가세 일반	SPS	- 식품 관련법령, 위생기준 조회 등	기타	- 기타 현지 비즈니스	성분 검사	• 현지 규정, 표준단위에 적합한 제품 영양성분 분석 및 검사 지원	라벨링 지원	•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 제작(등록) 지원	상표권 지원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사전상표검색 및 출원 대행 지원 * (신규) 마드리드 상표권 지원	중국 시험수출 One-stop 지원	• 대중국 시험수출물량 「통관 사전준비·물류·보관·마케팅」 단계적 시범지원	포장패키지 현지화	• 현지감각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	바이어 특화지원	• 바이어 경영진단, 코칭 및 컨설팅 • 식품 위생검사비(사전검역 포함), 수입식품 등록비(갱신비)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비관세 장벽해소	• 현지법률·제도(계약, 관세, SPS 등) 관련 애로 해소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분야</th><th>지원(자문) 내용</th></tr> </thead> <tbody> <tr> <td>법률일반</td><td>- 계약서 법률검토, 현지법인 설립, 현지 노동법률 등</td></tr> <tr> <td>통관</td><td>- 수입가능 여부, 성분비율 등 통관검토, 관세 등 부가세 일반</td></tr> <tr> <td>SPS</td><td>- 식품 관련법령, 위생기준 조회 등</td></tr> <tr> <td>기타</td><td>- 기타 현지 비즈니스</td></tr> </tbody> </table>	지원분야	지원(자문) 내용	법률일반	- 계약서 법률검토, 현지법인 설립, 현지 노동법률 등	통관	- 수입가능 여부, 성분비율 등 통관검토, 관세 등 부가세 일반	SPS	- 식품 관련법령, 위생기준 조회 등	기타	- 기타 현지 비즈니스																
지원분야	지원(자문) 내용																										
법률일반	- 계약서 법률검토, 현지법인 설립, 현지 노동법률 등																										
통관	- 수입가능 여부, 성분비율 등 통관검토, 관세 등 부가세 일반																										
SPS	- 식품 관련법령, 위생기준 조회 등																										
기타	- 기타 현지 비즈니스																										
성분 검사	• 현지 규정, 표준단위에 적합한 제품 영양성분 분석 및 검사 지원																										
라벨링 지원	•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 제작(등록) 지원																										
상표권 지원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사전상표검색 및 출원 대행 지원 * (신규) 마드리드 상표권 지원																										
중국 시험수출 One-stop 지원	• 대중국 시험수출물량 「통관 사전준비·물류·보관·마케팅」 단계적 시범지원																										
포장패키지 현지화	• 현지감각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																										
바이어 특화지원	• 바이어 경영진단, 코칭 및 컨설팅 • 식품 위생검사비(사전검역 포함), 수입식품 등록비(갱신비) 지원																										
이용방법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전산 신청 ○ 신청서류 : 현지화사업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등 ○ 모집광고 : www.at.or.kr, www.kati.net, global.at.or.kr 홈페이지 게시																										
담당부서	○ (농식품) aT 통상지원부 오세원 차장(061-931-0861) ○ (수 산) aT 수산수출부 진경훈 사원(061-931-0854)																										

2 수출품목육성·발굴

4. 수출통합조직 육성

개 요	○ 신선농산물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단위 수출농가와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단계적 수출통합조직 육성 지원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전문 통합마케팅조직 - 현행 수출선도조직 구성 품목은 수출통합조직화 추진, 미구성 품목은 생산자 중심 조직화 후 지원
신청요건	○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전문 통합마케팅조직 - 해당품목별 생산출자비율 75%, 해당품목 국가전체 수출비중이 90%이상이며, 수출물량 및 가격, 품질 등을 수출통합조직내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 가능 조직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전체 ○ 지원내용 : 현행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 지원(수출통합조직화 육성 지원) - 기반조성 인센티브 지원 : 국가전체 수출 점유율 및 운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2.5천만원~3억원 지원(총사업비 80% 이내) -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3~5% 지원 - 생산출자 인센티브 지원 : 생산자 출자 비율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3~5% 지원
진행절차	○ 수출통합조직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 운영관리, 약정서 등은 현행 수출선도조직 세부추진계획 준용
문의처	○ aT 농산수출부 장정호 차장(061-931-0822) - 김준성 대리(061-931-0829)



5. 수출선도조직 기반육성

개 요	○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수출물량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선도조직 육성 지원
지원대상	○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등 수출선도조직 선정업체
신청요건	○ 생산자 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마케팅 법인 ○ 수출전문단지, 생산자 단체와의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연합조직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17년 지정품목 :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양배추, 배, 사과, 감귤, 키위,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절화류, 백합, 포도, 당고추) ○ 지원내용 - 기반조성 인센티브 지원 : 국가전체 수출 점유율·수출규모 및 운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2.5천만원~5억원 지원(총사업비 80% 이내) -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3~5% 지원 - 생산출자 인센티브 지원 : 생산자 출자 비율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3~5% 지원 * 수출활성화 및 생산출자 인센티브는 수출통합조직 육성을 위해 조직화 단계별 1~2% 감축
진행절차	운영계획 수립 (연초) ▶ 모집공고 ▶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신청방법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작성·제출(본사) → 신청업체 평가(서면, 현장실사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체결(관할지사) → 사업추진
문의처	○ aT 농산수출부 장정호 차장(061-931-0822) 김준성 대리(061-931-0829)

6. 수출상품화 지원

개 요	○ 수출유망 고부가가치품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한 농식품 수출 기여		
지원대상	○ 신선 농산물 및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정착 관련 비용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역	비고
	1단계	• 상품개발·개선 및 마켓테스트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50백만원	－
	2단계	• 해외시장진입상품의 해외마케팅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50백만원	※ 2017년 상품화사업 1단계 수행업체만 지원가능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제외			
선정기준	○ 서류전형 → 계량평가(1.5배수) → 해외aT추천 및 공개발표평가 → 최종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100점) : 계량항목 평가를 통해 공개발표평가 대상업체 선정 ○ 공개발표평가(100점)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PT발표평가		
진행절차	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1월) ▶ 사업 약체체결 (1월) ▶ 사업추진 및 점검(연중) ▶ 정산 및 평가 (12월)		
모집시기	○ 2018.1.17.(수) 18:00까지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개척 사업 → 수출상품화지원사업 지원신청		
문의처	○ 식품수출부 하정아 과장 (061-931-0843) 김채은 대리 (061-931-0848)		



7.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개 요	○ 국내 우수 농식품 브랜드 대상 마케팅 집중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정부인증*보유, 주원료를 국산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나’형), 6차산업화인증, 지리적표시인증(GI)	
지원내용	구 분	세부사항
	지원내용	○ 목표국가 진출을 위한 브랜드 등록·홍보 마케팅, 브랜드 컨설팅 비용 등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업체당 최대 2억원) ○ 지원비율 : 1~3년차(80%), 4~5년차(50%) * 약정서에 기재한 총사업비의 80% 이상 집행 시 정산 가능
	지원업체	○ 12업체 내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 제외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발표평가 → 사업자 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평가구성(100점) : 계량 30점, 비계량 70점 - 계량평가(30점) : 수출실적, 자기자본비율, 매출액 등 계량실적 평가 - 발표평가(70점)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PT발표 및 심사 - 최종선정 :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순 선정 * '17~18년 연속지원 업체 : 계량·비계량 합산 70점 이상 획득 업체 * '18년 신규 지원업체 : 계량·비계량 합산 60점 이상 획득 업체	
진행절차	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1월) ▶ 약정체결 (2월) ▶ 사업추진 (2~11월) ▶ 정산 및 평가 (12월) * 사업추진 기간 내 중간평가 및 현장점검 실시	
신청방법	○ 모집시기 : 2018.1.19.(금) 18:00까지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문의처	○ aT 식품수출부 정규영 차장(061-931-0842) 정재열 과장(061-931-0845)	

8. 농식품 스타콜라보 마케팅

개 요	○ 정부인증 농식품 등 우리 우수 농식품 수출업체와 한류스타와 매칭을 통한 제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정부인증*보유, 주원료를 국산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나'형), 6차산업화인증, 지리적표시인증(GI)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 분	농식품 스타 콜라보 마케팅												
	지원내용	○ 한류스타와 연계한 홍보 콘텐츠 제작비용, 상품 온/오프라인 해외 판촉홍보 등												
	사업비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업체별 50백만원 한도)												
	선정방법	○ (대행업체) 연예기획사 등 업계에서 참여의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서 접수 및 내·외부 평가위원회 구성 ○ (지원업체) 희망 수출업체(수출상품) 모집 및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												
	사업량	○ 8업체 내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 제외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발표평가(선정위원회) → 사업자 선정 － 평가대상 : 업체별 사업 계획서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평가구성 : 계량 30점, 비계량 70점(면접심사) － 최종선정 : 최종 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필요시 추가선정 가능) * 비계량평가 시 선정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4인 이상)을 통해 객관성 제고 * 대행업체 선정은 별도 평가방법으로 추진													
진행절차	<table><tr><td>모집공고 (1월)</td><td>▶</td><td>업체선정 (2월)</td><td>▶</td><td>약정체결 (2월)</td><td>▶</td><td>사업추진 (2~11월)</td><td>▶</td><td>정산 및 평가 (12월)</td></tr></table>					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2월)	▶	약정체결 (2월)	▶	사업추진 (2~11월)	▶	정산 및 평가 (12월)
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2월)	▶	약정체결 (2월)	▶	사업추진 (2~11월)	▶	정산 및 평가 (12월)						
신청방법	○ 모집시기 : 1월 중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문의처	○ aT 식품수출부 성국경 차장(061-931-0841) 전유현 과장(061-931-0844)													



3.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9. 수출전문단지 조직화 교육

개요	○ 안전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출집약형 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식품부 훈령 제221호에 의한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원품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가목의 농산물(단, 임산물 제외)								
신청요건	○ 동일품목 및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 단지 연합신청 및 수출업체 참여형태 우선지원 및 사업추진 최소단위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1개소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점상, 안전성전담관리인력 고용여부 신청 필수요건(참여단지별)								
지원내용	○ 농가인식개선, 시스템구축, 인력양성 등 3대 부문의 소요예산의 90%지원 (지원한도 : 소축농가수 50인이상 20백만원, 20인이상 15백만원, 20인미만 12백만원))								
	<table><tr><th>부문</th><th>세부지원내역</th></tr><tr><td>농가인식 개선</td><td>- 소축농가안전성교육, 생산기술품질관리교육, 수출국가별 검역(방제)교육을 위한 회의관련비용 및 농약사용매뉴얼·책자·품질품위 기준 포스터 제작 - 컨설팅비, 회의실 입차, 책자 및 인쇄물 제작 등 인쇄비</td></tr><tr><td>안전성시스템 구축</td><td>- 농약·병해충 기록 전산시스템구축, ERP시스템 구축, 농약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등 IT관련 시스템 개발 및 농약 보관박스 제작 등</td></tr><tr><td>전문인력 양성</td><td>- 안전성 전담관리인력 워크샵(식비포함)·선진농업사례 현장조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자격 취득 비용, 전문서적 구입비용</td></tr></table>	부문	세부지원내역	농가인식 개선	- 소축농가안전성교육, 생산기술품질관리교육, 수출국가별 검역(방제)교육을 위한 회의관련비용 및 농약사용매뉴얼·책자·품질품위 기준 포스터 제작 - 컨설팅비, 회의실 입차, 책자 및 인쇄물 제작 등 인쇄비	안전성시스템 구축	- 농약·병해충 기록 전산시스템구축, ERP시스템 구축, 농약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등 IT관련 시스템 개발 및 농약 보관박스 제작 등	전문인력 양성	- 안전성 전담관리인력 워크샵(식비포함)·선진농업사례 현장조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자격 취득 비용, 전문서적 구입비용
	부문	세부지원내역							
	농가인식 개선	- 소축농가안전성교육, 생산기술품질관리교육, 수출국가별 검역(방제)교육을 위한 회의관련비용 및 농약사용매뉴얼·책자·품질품위 기준 포스터 제작 - 컨설팅비, 회의실 입차, 책자 및 인쇄물 제작 등 인쇄비							
	안전성시스템 구축	- 농약·병해충 기록 전산시스템구축, ERP시스템 구축, 농약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등 IT관련 시스템 개발 및 농약 보관박스 제작 등							
전문인력 양성	- 안전성 전담관리인력 워크샵(식비포함)·선진농업사례 현장조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자격 취득 비용, 전문서적 구입비용								
담당부서	○ aT 농산수출부 이세호 과장(061-931-0825) 한유진 대리(061-931-0824)								

10. 안전성조사

개요	○ 수출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는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환경 조성
지원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자 및 수출농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 ○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 ○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 지원품목 : 가공식품 전반 - 지원내용 : 對 일본 수출 시 수입식품 의무검사주기 완화 및 수입시 수입식품반출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서비스 지원
추진절차 및 이용방법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운영계획 수립 (본사) ▶ 모집공고 (본사, 연중) ▶ 검사비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업체) ▶ 신청서류 검토 (지역본부) ▶ 검사비 지원 (지역본부) ○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운영계획 수립 (본사) ▶ 모집공고 (본사, 연중) ▶ 신청서류 제출 (수출업체→본사) ▶ 서류 검토 및 일본후생노동성 등록 (aT→한일대사관→일본후생노동성)
담당부서	○ (잔류농약, 식품위생) - 이세호 과장(061-931-0825), 김준성 대리(061-931-0829) - aT 각 관할지역본부 ○ (대일수출가공식품사전등록) 정재열 과장(061-931-0845)



11. 선도유지제 지원

개 요	○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유지제 구입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산물 생산자 조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부가세 제외)의 90%												
	○ 지원 한도 : 업체당 연간 50백만원												
	*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 선도조직 연합법인에 대해서는 연합법인 참여업체별 지원한도 인정												
	○ 지원 기준												
	<table><tr><th>선도유지제명</th><th>지원부류(품목)</th></tr><tr><td>전처리제</td><td>화훼류</td></tr><tr><td>이산화탄소 흡수제</td><td>김치류</td></tr><tr><td>이산화탄소 처리제</td><td>딸기, 버섯</td></tr><tr><td>훈증살균제</td><td>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키위</td></tr><tr><td>선도유지팩/패드</td><td>과실류, 채소류</td></tr></table>	선도유지제명	지원부류(품목)	전처리제	화훼류	이산화탄소 흡수제	김치류	이산화탄소 처리제	딸기, 버섯	훈증살균제	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키위	선도유지팩/패드	과실류, 채소류
선도유지제명	지원부류(품목)												
전처리제	화훼류												
이산화탄소 흡수제	김치류												
이산화탄소 처리제	딸기, 버섯												
훈증살균제	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키위												
선도유지팩/패드	과실류, 채소류												
	* 제품별 세부지원한도는 atess.at.or.kr 참조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atess.at.or.kr)을 통한 전산신청 후 aT 관할지역본부에 선도유지제 구입 및 사용 증빙 송부(연중) ○ 제출 서류 : 선도유지제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용내역서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필수 * 수출신고필증, 선도유지제 구입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												
담당부서	○ aT 농산수출부 김준성 대리(061-931-0829) ○ aT 지역본부 담당자												

4. 통관 및 물류지원

12. 수출물류비 지원

개 요	○ 포장·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10만\$ 이상인 업체 - 단, 일본채소류ID 대상품목은 ID보유 시에 한하여 지원 (일본 채소류ID 대상품목 : 방울토마토, 토마토, 파프리카, 청고추, 참외)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및 신선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 지원부류 :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쌀가공품, 차류, 미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2개 부류							
지원내용	지원한도	표준물류비의 35%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10% 내외/수출업체 지자제(25% 내외/수출업체+농가분) 분담하여 지원						
	내 용	• '18.1.1~12.31 수출물량 지원(B/L상의 수출선적일 기준) • 중앙정부 매월 / 지자제 사정에 따라 지원						
	지원액	수출물량 × 품목별·국가별 지원단가(표준물류비의 35% 이내)						
추진절차	지원업체 사전등록 ▶ 신청접수 (매월 초) ▶ 지원신청서 검토 ▶ 지원금액 계산 및 지급(매월 말)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업체 기본정보 입력 → 수출실적 입력 → 지원신청서(전산출력) 및 수출증빙자료 제출(관할aT지역본부)							
담당부서	○ aT 농산수출부 - 담당자 : 이나래 대리(061-931-0823) ○ aT 지역본부별 담당자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강인구	031)8060-6051	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김 석	062)940-7017
	인천	인천지역본부	장재완	032)272-3012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남기학	053)218-4907
	강원	강원지역본부	곽중문	033)920-1545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장지희	051)947-1086
	충북	충북지역본부	김유리	043)902-9529	경남	경남지역본부	안보람	055)274-4813
	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이은지	042)389-5023	제주	제주지역본부	강주미	064)746-9479
	전북	전북지역본부	유승희	063)904-5873	-	-	-	-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협상결과에 따라 2023년까지 수출물류비를 철폐할 예정으로, 이에 대비해 2018년부터 수출물류비 단계적 감축 계획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3. 항공공동물류활성화

개 요	항공공동물류 규모화, 공동화를 통해 신선농산물 수출 운송비 절감 유도 및 물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신선농산물 농식품 수출업체(화주)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사와 MOU체결 공동물류노선 이용 수출물량에 대해 할인된 운임 제공 - 공동물류 참여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항공) 유통할증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수산·임산물 및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물량은 인센티브 지원 제외
진행절차	수출업체 모집 및 신청(수시) ▶ 이용실적 보고 및 인센티브 신청(매월) ▶ 인센티브 지원(매월)
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온라인 신청 → 공동물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 지원신청서 작성
문의처	- aT 통상지원부 윤상영 차장(061-931-0862) - 김지원 사원(061-931-0866)

14. 해외공동물류센터

개요	○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한 냉장·냉동 물류서비스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바이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											
지원내용	○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료(보관료, 입출고료)의 80% 이내 - 업체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상이(5백만원~5천만원) <table><tr><th>구분</th><th>지원대상</th><th>지원내용</th></tr><tr><td rowspan="2">해외공동물류센터</td><td>냉동·냉장창고</td><td>(신선) 이용료의 90% (가공) 이용료의 70%</td></tr><tr><td>상온창고 (청다오물류센터)</td><td>이용료의 50%</td></tr><tr><td>도쿄소포장센터</td><td>소포장센터</td><td>임차료의 60~80%</td></tr></table>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해외공동물류센터	냉동·냉장창고	(신선) 이용료의 90% (가공) 이용료의 70%	상온창고 (청다오물류센터)	이용료의 50%	도쿄소포장센터	소포장센터	임차료의 60~80%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해외공동물류센터	냉동·냉장창고	(신선) 이용료의 90% (가공) 이용료의 70%										
	상온창고 (청다오물류센터)	이용료의 50%										
도쿄소포장센터	소포장센터	임차료의 60~80%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모집 및 선정(상·하반기) ▶ 사업집행 및 정산(매월) (1~11월)											
이용방법	수출업체 ② 선정 → aT해외지사 관리감독 ↓ ⑤ 비용정산 위탁 물류업체 (창고) ↓ ④ 물품인도 바이어 ① 오더 및 계약체결 ③ 대금결제 ④ 운송 → 유통업체											
추진현황 및 계획	○ 현 황 : 16개국 55개소 ○ 계 획 : 17개국 58개소('18년)											
담당부서	○ aT 통상지원부 윤상영 차장(061-931-0862) 김지원 사원(061-931-0866)											



15. 중국 콜드체인 구축사업

개 요	○농식품 냉장·냉동 물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중국 내륙지역 콜드체인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 냉동·냉장식품 내륙시장 개척 강화		
지원대상	○중국의 한국 농식품 바이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칭다오물류센터→중국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비 80% 지원 - 주요 물류거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공동물류센터에서 거점지역 내 근거리 배송 지원 - 냉장식품 및 신선육류에 필요한 소량 냉동식품 항공운송료 80% 지원		
	○지원한도 : 정기노선 및 비정기노선 업체별 10~50백만원 - '18년 이용업체 모집 및 기존업체 평가를 통해 업체당 한도 설정		
	구분	출발지역	도착지역
	정기선	칭다오 물류센터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 공동물류센터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
	정기선 (거점지역내 배송)	거점지역 공동물류센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 거점지역 소비처 - 유통매장, 경소상 창고 등
비정기선	칭다오 물류센터	• 중국 내륙지역 - 공동물류센터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	
비정기선 (항공운송)	칭다오 물류센터	• 중국 내륙지역 - 업체 항공운송 희망지역	
선정기준	○'18년 이용업체 모집 및 평가를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지원내용	지원방법	이용업체 선정
	중국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비(80%)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 이용업체는 칭다오aT물류유통공사가 모집 및 선정하고, 업체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
진행절차	모집공고 (1월) ▶ 업체평가, 선정 (1월) ▶ 사업 약정체결 (2월)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연중) ▶ 정산 및 종합평가 (12월)		
신청방법	○모집시기 : `18.1월 중~1월 말 ○참가신청 :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칭다오aT물류유통공사		
문의처	○aT 통상지원부 윤상영 차장(061-931-0862) 김지원 사원(061-931-0866)		

16.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개 요	○FTA특혜관세 활용을 통한 수출업체 가격경쟁력 확보 및 수출확대 기회 활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애로사항 컨설팅 및 교육		
지원대상	○수출 농산물 생산자단체/조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지원 내용 [생산자조직·단체] - 생산 및 공급 입증서류 작성·관리 프로세스 구축 - FTA 관련 기본 교육 및 유통단계별 원산지 관리 전략 수립 -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 및 생산자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적용 [수출업체] - FTA 관련 기본 교육 및 거래 현황 분석 - 거래 단계별 생산 및 공급 입증서류 확인방법(가이드라인) 교육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방법 및 시스템 활용방법 교육 - 원산지 증명서·확인서 실제 발급 대행 ※ 1:1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의 FTA 활용 및 통관 무역실무능력 제고		
추진절차	1~2월 ▶ 2월 ▶ 3~10월 ▶ 11월 ▶ 12월 사업공고 및 지원업체 모집 지원대상 선정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사업시행 최종점검 및 결과보고 정산 및 평가		
이용방법	○aT 홈페이지에서 전산 신청(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모집공고 : www.at.or.kr, global.at.or.kr 웹사이트에 게시		
추진현황 및 계획	○신청 기간 : 2018. 2월(예정) ○사업 시행 : 2018. 3~11월		
담당부서	○aT 통상지원부 오세원 차장(061-931-0861)		



17.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개 요	◦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에 소요되는 통관운송비 지원을 통해 해외 신규바이어 발굴 및 잠재적 수출시장개척 도모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품목 및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품목</th><th>지원내용</th></tr> </thead> <tbody> <tr> <td>수출농식품 전반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td><td> • 지원비율 : 바이어대상 샘플제공 국내의 통관·운송비의 9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 단,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함 *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10BOX & 50kg 한도 내에서 지원 * 동일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 최대 4회 인정 </td></tr> </tbody> </table>	지원품목	지원내용	수출농식품 전반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비율 : 바이어대상 샘플제공 국내의 통관·운송비의 9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 단,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함 *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10BOX & 50kg 한도 내에서 지원 * 동일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 최대 4회 인정
지원품목	지원내용				
수출농식품 전반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비율 : 바이어대상 샘플제공 국내의 통관·운송비의 9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 단,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함 *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10BOX & 50kg 한도 내에서 지원 * 동일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 최대 4회 인정				
추진절차	수출지원시스템 지원 신청 ▶ 관련 증빙검토 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월1회) ▶ 본사는 지사별 결과 취합후 정산지급				
추진현황 및 계획	◦ 샘플통관운송비지원사업 공고(1월) ◦ 매월1회 사업비 정산 지급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신선농산물 : 20백만원(20업체) - 가공식품 : 80백만원(60업체)				
이용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 → 관련 증빙서류(통관·운송비 영수증, 마켓테스트 결과) 관할지역본부에 제출				
담당부서	◦ aT 시장다변화T/F팀 - 담당자 : 송미정 차장(061-931-0884)				

18. 수출보험지원

개 요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을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항목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	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션형(부분보장/완전보장) 가입비		선적후 및 농수산물패키지, 중소기업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비율	가입보험료의 95%		가입보험료의 90% * 단, 단체보험은 100%		
	지원한도	30백만원 한도		30백만원 한도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가능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진행절차	○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 ○ 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보험가입 시 자부담분(가입보험료의 5~10%)에 한하여 가입비 납부 - 단, 단체보험의 경우 aT에서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업체 자부담 없음 - 단체보험 가입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문의처	○ aT 농산수출부 - 담당자 : 오승주 대리(061-931-0826) ○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중앙지사	02-399-6964	대전세종충남지사	042-526-3291	경남지사	055-286-9394
	강남지사	02-551-0481	충북지사	043-236-1301	전북지사	063-276-2363
	구로디지털단지	02-6300-6300	강원지사	033-765-1061	광주전라남도지사	062-226-4823
	경기남부지사	031-259-7600	부산지사	051-245-3981	제주지사	064-751-6602
	경기북부지사	031-932-3501	대구경북지사	053-252-4932	시화출장소	031-499-5590
	인천지사	032-422-2713	울산지사	052-261-1833	천안출장소	041-622-7516



<참고>

■ 환변동보험 종류 ■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선물환 (Forward)	환율하락시 보험공사에서 환차손(보험금) 지급하고, 환율상승시 업체에서 환차익(환수금) 납부 - 보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환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환율하락시 보장타월 하나, 환율 상승시 업체에서 부담
범위제한선물환 (Collar)	일정구간에서는 보험금과 환수금 납부가 면제되는 상품 - 보험금 : 보장환율 -50원>결제환율 - 환수금 : 보장환율 +50원<결제환율	○ ±50원, ±100원, ±200원 구간에서 환차익, 환손실 인정 ○ 보험요율 : 1 ~ 3%로 수시변동
부분보장 옵션형 (Put Spread Option)	환율하락시에는 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최대 달러당 20 ~ 80원 한도 범위내)하고, 환율 상승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환율하락시에는 일정부분만 보장(최대 달러당 20 ~ 80원 한도 범위내)받고, 환율상승시 업체부담 없음
완전보장 옵션형 (Put Option)	환율하락시에는 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락분 전액 지급)하고, 환율 상승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환율하락시 하락분 전액 보장 받고, 환율상승시 업체부담 없음

* 지원비용은 모두 가입보험료의 95%로 동일하며, 지원한도는 일반선물환, 범위제한선물환, 부분보장형옵션을 합산하여 30백만원 한도임

*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문의 요망

■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eic.or.kr/>) 영업점 연락처 ■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중앙지사	02-399-6964	대전세종충남지사	042-526-3291	경남지사	055-286-9394
강남지사	02-551-0481	충북지사	043-236-1301	전북지사	063-276-2363
구로디지털단지	02-6300-6300	강원지사	033-765-1061	광주전남지사	062-226-4823
경기남부지사	031-259-7600	부산지사	051-245-3981	제주지사	064-751-6602
경기북부지사	031-932-3501	대구경북지사	053-252-4932	시화출장소	031-499-5590
인천지사	032-422-2713	울산지사	052-261-1833	천안출장소	041-622-7516

<참고>

■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 패키지) ■

■ 상품개요

- 구 성 : 기본위험과 선택위험
- 계약기간 : 1년
- 가입대상 : 농수산물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보상금액 : 책임금액 범위 내
- 가입방법 : 기본위험(대금미회수 위험) 가입 필수, 나머지 위험은 선택

■ 상품별 설명

구 분	기본계약	선 택 계 약	
	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발생 위험
책임금액	1억원 ~ 3억원	1백만원 ~ 1천만원	1천만원 ~ 5천만원
보상요건	수입자 또는 수입국의 사정으로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수입국 검역과정에서 소독, 폐기 명령	바이어의 클레임 제기
보상내용	계약기간 중 모든 수출거래	혼중 및 폐기 비용 보상	클레임 처리비용 (조사, 소송 등)
계 약 액	천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	천만원 단위
보험요율	신용장거래 0.3%	4%	0.7%
무신용장	무신용장 2.0%		
보상거절	물품에 하자 또는 법령 위반 수출시		본지사간 수출거래, 법령위반 및 수출대금 결제 만기일 경과후 발생한 클레임
보상시기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이내		
보 상 액	보험계약 범위내에서 보상	소독 및 폐기 비용	품질조사비 및 중재, 소송비100%, 재수입 또는 전매시 운송비 및 현지 창고 보관비 50%

* 보험요율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일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와 농수산물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의 차이점 ■

구 분	농수산물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일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품 목	농·수·축·임산물	제한 없음
우대내용	담보위험	수입국의 행정규제조치 또는 검역기준 변경에 따른 통관불능 위험 포함
	보험료율	결제방법 및 기간에 따라 단기수출보험의 35% ~ 55% 수준



19. 해외인증 등록지원

개 요	○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대 상 인증제도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서,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농인증, ISO22000 등 * 단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특정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table><tr><th>지원기준</th><th>지원범위</th><th>지원한도</th></tr><tr><td>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td><td>관납료(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 등</td><td>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td></tr></table>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관납료(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 등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관납료(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 등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18년 2월) ▶ 신청서 평가 후 대상업체 선정 ▶ 인증 취득 후 관련증빙 제출 ▶ 증빙 검토 후 비용지원								
추진현황 및 계획	○ 지원대상 선정업체가 인증 획득 완료 후 aT지사에 정산 요청								
이용방법	○ 수출업체는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사업 신청 ○ aT본사에서 신청내역 평가 후 지원대상 업체를 일괄 선정하여 aT관할지사에 통보 / aT관할지사는 해당 업체에 선정결과 안내 및 사후관리 ○ 수출업체는 인증취득 후 aT 지사에 해당 인증서 사본, 관련증빙서 제출 ○ aT지사는 증빙서 검토 후 정산지원 결과를 본사 보고								
담당부서	○ aT 아태수출부 - 담당자 : 윤진형 대리(061-931-0963)								

① 할랄식품(Halal Food) 인증 소개

개 요	○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식품(Halal Food)’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농수산식품을 의미 - 철저하게 할랄이 아닌 음식과 분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우 청결한 음식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요구 - 비할랄식품 :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저장·판매·처리·보존 과정에서 돼지고기와 접촉한 식품, 모든 생물의 피 및 배설물, 주류성분이나 중독성분 함유제품 등									
보급현황	○ 할랄의 시장규모는 '12년 1조 88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world halal forum 자료) - 2012년 전세계 인구의 18억 명, 2020년 전세계 인구의 30% 이상 달할 것으로 전망 ○ 할랄제품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으로 비무슬림인 사이에서도 인기 상승 - 네덜란드의 할랄 쿠키·초콜릿 제조업체 마르하바 소비자의 25%는 비무슬림인									
인 증 취득절차	○ 현재 한국이슬람교중앙회(KFM)가 할랄증명서 발급 - '13년 7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JAKIM(이슬람 개발부)가 동등성을 인정하는 할랄 인증기관이 됨 ○ 인도네시아 : MUI 부속기관인 LPPOM-MUI에서 발급 -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할랄 인증은 협상 추진 중 - 품목별 100만 ~ 500만 루피아 및 약 1 ~ 2개월 소요 - 인도네시아에서 현행 할랄 인증은 권고사항이나 5년 후에는 의무사항으로 변경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인 MS1500:2009는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에 의해 개발된 할랄 제품의 생산, 취급, 보관기준에 대한 ISO인증이며, GMP와 GHP와 같은 국제기준을 준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인증 절차</th><th>인증 로고와 인증서</th></tr> </thead> <tbody> <tr> <td>Document Approval</td><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td></tr> <tr><td>Premise Inspection/Audit</td></tr> <tr><td>Report Writing</td></tr> <tr><td>Panel Committee</td></tr> <tr><td>Issuance of Halal Certificate</td></tr> <tr><td>Monitoring and Enforcement</td></tr> </tbody> </table>	인증 절차	인증 로고와 인증서	Document Approval		Premise Inspection/Audit	Report Writing	Panel Committee	Issuance of Halal Certificate	Monitoring and Enforcement
인증 절차	인증 로고와 인증서									
Document Approval										
Premise Inspection/Audit										
Report Writing										
Panel Committee										
Issuance of Halal Certificate										
Monitoring and Enforcement										
해 외 발급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국 가</th><th>발급기관</th></tr> </thead> <tbody> <tr> <td>인도네시아</td><td>The Assesment Institute for Foods, Drugs and Cosmetics Council of Ulama(LPPOM-MUI)</td></tr> <tr> <td>말레이시아</td><td>Ministry of Islamic Development</td></tr> </tbody> </table>	국 가	발급기관	인도네시아	The Assesment Institute for Foods, Drugs and Cosmetics Council of Ulama(LPPOM-MUI)	말레이시아	Ministry of Islamic Development			
국 가	발급기관									
인도네시아	The Assesment Institute for Foods, Drugs and Cosmetics Council of Ulama(LPPOM-MUI)									
말레이시아	Ministry of Islamic Development									
소요비용	○ (국내) 품목당 약 100만원, (해외) 품목당 약 30백만원									



② 코셔(Kosher) 인증 소개

개 요	◦ '코셔(Kosher)'란 히브리어로 '적합한'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유대율법에 합당한 음식'이란 의미로 사용됨 - 코셔에 해당하는 육류와 가금류는 반드시 규정된 방식으로 도살하여야 하며, 육류와 유제품은 함께 생산 또는 섭취 불가 ◦ 코셔 인증이란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통해 특정 식품의 코셔 기준에 부합 여부를 가리는 제도				
보급현황	◦ 세계 코셔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 미국의 코셔 시장규모는 '13년 기준 13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며 코셔 식품시장은 연평균 12.5%의 성장율을 보임 - 미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식료품의 40%가 코셔 인증마크를 부착 - 무슬림 또한 코셔 식품을 먹을 수 있어 20억 무슬림 인구가 잠재시장으로 추정				
인 증 취득절차	◦ 인증기관 : 수백 개의 코셔 인증기관 중 OU, Star-K, KosherQuest 등이 가장 알려져 있으며 이 중 OU마크가 전체 코셔 제품의 70 ~ 80% 차지 * ADM, Cargill, Campbell, Coca Cola, Heinz, Nestle 등 세계적 식품기업 OU마크 선택 ◦ 인증종류 : 제품 종류에 따라 OU(우유, 육류 비포함), OU-D(유제품), OU-M(육류) 등으로 구분 ◦ 인증 절차 및 마크 <table border="1"> <thead> <tr> <th>인증 절차</th><th>인증 로고</th></tr> </thead> <tbody> <tr> <td>신청서 제출 → 생산 시설 검사 (OU 실현 가능성 검토) → 이사회 평가 승인 → 계약서 작성 → 생산 시설 재검사 → 코셔 인증서 발급</td><td></td></tr> </tbody> </table> ◦ 소요기간 : 평균 3개월 소요	인증 절차	인증 로고	신청서 제출 → 생산 시설 검사 (OU 실현 가능성 검토) → 이사회 평가 승인 → 계약서 작성 → 생산 시설 재검사 → 코셔 인증서 발급	
인증 절차	인증 로고				
신청서 제출 → 생산 시설 검사 (OU 실현 가능성 검토) → 이사회 평가 승인 → 계약서 작성 → 생산 시설 재검사 → 코셔 인증서 발급					
소요비용	◦ 품목당 연간 \$5,000 ~ \$7,000				

5. 현지 유통망 개척

20.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① 종합박람회 참가

개 요	◦ 주요 해외식품박람회별로 국내 수출업체를 모집하여 국가관 형태로 참가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한도
	• 부스임차비	중소기업 대기업	100% 50%	1부스
	• 장치비	중소기업 대기업	100% 50%	1부스
	• 기본비품임차비	중소기업 대기업	100% 50%	1부스
	• 운송통관비 / 전기료 냉장(냉동)비품임차비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100%	300만원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전시품 발송 및 비품 신청(2개월 전) ▶ 박람회 참가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 : 연간 31회 참가 ◦ 계획 : '18년 상반기 참가업체 모집(4월), '19년 참가계획 확정('18.10월)			
이용방법	◦ 모집시기 : 연 2회, 상반기(4월, 10월) ◦ 참가신청 : aT홈페이지(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			
담당부서	◦ aT 구미수출부 오성훈 차장(061-931-0971)			



<참고> '18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계획

구 분	주최국/도시	개최일정
<종합박람회 >		31회
1. 두바이(Gulfood)	UAE / 두바이	2.18-22
2. 멕시코(Alimentaria)	멕시코 / 과달라하라	3.6-8
3. 도쿄(FoodexJapan)	일본 / 도쿄	3.6-9
4. 애너하임(NPEW)	미국 / 애너하임	3.8-11
5. 북경 유아용품박람회(MICF)	중국 / 베이징	4.14-16
6. 바르셀로나(Barcelona)	스페인 / 바르셀로나	4.16-19
7. 싱가포르(F&H Asia)	싱가포르	4.24-27
8. 캐나다(SIAL)	캐나다 / 몬트리올	5.2-4
9. 아프리카(F&H Africa)	남아공 / 요하네스	5.6-8
10. 브라질(APAS)	브라질 / 상파울로	5.7-10
11. 스위스(Vitafoods)	스위스 / 제네바	5.15-17
12. 상하이(SIAL China)	중국 / 상하이	5.16-18
13. 방콕(Thaifex)	태국 / 방콕	5.29-6.2
14. 미얀마(F&H Myanmar)	미얀마 / 양곤	6.6-6.8
15. 광저우(China IFE)	중국/ 광저우	6.28-30
16. 타이베이(Food Taipei)	대만 / 타이베이	6.27-30
17. 말레이시아(MIFB)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6.27-29
18. 뉴욕(Fancy Food Show)	미국 / 뉴욕	6.30-7.2
19. 필리핀(Wofex)	필리핀 / 마닐라	8.1-4
20. 홍콩(HKTDC)	홍콩	8.16-18
21. 홍콩신선(Fruit Logistica)	홍콩	9.5-7
22. 이스탄불(WFI)	터키 / 이스탄불	9.6-9
23. 모스크바(WFM)	러시아 / 모스크바	9.10-13
24. 호주(Fine Food Australia)	호주 / 멜버른	9.10-13
25. 인도(World of Food India)	인도 / 뭄바이	9.27-29
26. 파리(Sial Paris)	프랑스 / 파리	10.21-25
27. 카자흐스탄(WFK)	카자흐스탄 / 알마티	11.7-9
28. 시베리아(Inter Food Siberia)	러시아 / 노보시비르	11.14-16
29. 호치민(Food Expo Vietnam)	베트남 / 호치민	11.14-17
30. 자카르타(Sial Interfood)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11.21-24
31. 베이징(Anufood China)	중국 / 베이징	11월

② 개별박람회 참가

개요	○ aT 또는 유관기관이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구분	5대 시장	동남아 시장	기타 시장
	지원한도	5,000천원 / 1회		7,000천원 / 1회
	해당지역	• 5대 시장 : 일본, 미국, 중국(홍콩), 러시아, 대만 • 동남아 시장		• 5대 시장과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
지원항목	• 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전시품 운송통관비(운송사를 통한 운송통관비만 지급)			
* 대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의 50% 범위 내 지원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상반기 : 전년 12월 하반기 : 당년 5월) ▶ 박람회참가 (연중) ▶ 참가비지원 (30일 이내)			
이용방법	○ 모집시기 : 연 2회(4월, 11월) ○ 참가신청 : aT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개별참가박람회 모집공고 → 개별참가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 : 연간 150회 ○ 계획 : '18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4월)			
담당부서	○ aT 구미수출부 조명희 과장(061-931-0973)			



21. 바이어 거래알선

① 대규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개 요	○ 해외aT 및 재외공관 추천 우수바이어 초청을 통한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로 새로운 수출거래선 창출																			
지원대상	○ 해외바이어(수입업체, 벤더, 유통업체) ○ 국내수출업체																			
지원내용	○ 해외바이어 한국 출장 및 상담기회 제공 - 왕복 항공료(Economy), 체재비, 통역, 기타 교통편의 등 - 상담회장 내 상담부스 제공, 사전 매칭된 수출업체와 1:1 상담 ○ 국내수출업체 바이어와 상담기회 제공 - 사전 매칭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진행																			
지원절차	모집공고 ▶ 국내업체 바이어 매칭 신청 ▶ 상담추선 ▶ 상담회 개최 * '상담추선'은 바이어가 상담 원하는 수출업체를 결정하여 매칭																			
이용방법	○ 모집시기 : 미정 ○ 참가신청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 → 온라인 신청(bms.at.or.kr) → 상담 스케줄 확인(bms.at.or.kr)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2017) <table><tr><th>행사명</th><th>실시일</th><th>초청 바이어</th><th>참가 수출업체</th><th>상담금액 (천불)</th></tr><tr><td>상반기 Buy Korean Food 2017</td><td>6.13</td><td>97명</td><td>314개</td><td>237,703</td></tr><tr><td>하반기 Buy Korean Food 2017</td><td>11.29</td><td>111명</td><td>255개</td><td>163,004</td></tr></table> ○ 계획(2018) - Buy Korean Food 2018 개최(미정)					행사명	실시일	초청 바이어	참가 수출업체	상담금액 (천불)	상반기 Buy Korean Food 2017	6.13	97명	314개	237,703	하반기 Buy Korean Food 2017	11.29	111명	255개	163,004
행사명	실시일	초청 바이어	참가 수출업체	상담금액 (천불)																
상반기 Buy Korean Food 2017	6.13	97명	314개	237,703																
하반기 Buy Korean Food 2017	11.29	111명	255개	163,004																
담당부서	○ aT 구미수출부 이광성 과장 (061-931-0972)																			

② 수출업체 바이어 초청 지원

개 요	○ 수출업체의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을 통해 실질적인 상담 및 계약 수주를 지원하여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수출업체 당 1명의 바이어 초청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 항공료 : 이코노미 등급 왕복 기준 - 숙박비 : 50만원 이내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 업체 선정 및 사업 실행 ▶ 결과보고 제출 ▶ 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이용방법	○ 모집시기 : 연 1회(상반기) ○ 참가신청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 → 온라인 신청(global.at.or.kr) ○ 선정심사기준 : 초청바이어 국가의 우리 농식품 수입 증가율, 상담품목의 수입확대 가능성 및 현지시장 진출 용이성 등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2017) : 58명 ○ 계획(2018) : 총 70명
담당부서	○ aT 구미수출부 김혜진 사원(061-931-0975)



22.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개 요	○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읍인숍 등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 한국농식품 취급 해외 벤더 및 수입상 또는 국내 수출업체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8. 1월 ~ 11월말(3~10개월 내외)		
	사업내용	읍인숍 등 현지 여건에 맞는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음·시식 등 마켓테스트 실시, 소비자 반응 조사를 통해 현지 유통매장 신규 입점 추진 등		
	지원국가	중국 2, 동남아 2, 서남아 1, 중동 1, 유럽 1, 중앙아 1, 중남미 1 * 기존 안테나숍 운영국가 및 지역은 선정 제외 ** 지원국가는 사업 수요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내용	안테나숍 임차·장차비, 홍보비, 시식비 등 마케팅비용		
지원한도액	지원기준	국비 80%, 자부담 20%		
	지원기간	운영기간 및 지원 연차에 따라 지원 차등		
		구 분	1년차	2년차
		지원	150	-
		한도 (백만원)	200	85
지원절차	세부실행계획 수립	운영주체 선정	업무위탁 및 준비	안테나숍 운영
	• 세부 실행 계획 수립(aT) • 농식품부 승인	• 운영 주 체 모집공고 • 운영 주 체 선정	• 운 영 주 체 업 무 약 정 체결(본사, 해외) • 물품전시준비 등 • 기타 현장업무	• 운영 • 정산 • 사후관리(성과)
	이용방법			
	○ 모집시기 : 연초 ○ 참가신청 : 관할해외지사 or 본사(관할지사가 없는 지역)에 신청 - 본사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는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 -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선정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 비계량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추진현황 및 계획			
	○ '18년도 신규사업자 모집공고(1월초) ○ 최종사업자 선정 통보(1월말) ○ 선정된 운영주체의 현지 매장 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현지실사 추진(2월) ○ 현지실사 후 약정체결(2월) ○ 운영(오픈이후~11월말) ○ 안테나숍 운영주체 초청 우수신상품 홍보설명회(5월경)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12월)			
담당부서	○ aT 시장다변화부 서권재 과장(cinbobseo@at.or.kr) 이혜원 대리(hwe120121@at.or.kr)			

23.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지원

개 요	○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확대 및 안정적 수출여건 확보													
지원대상	○ 수출시장 다변화사업 대상 전략국가 5개 권역 20개국에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 모집공고 시 확인가능													
지원내용	○ 선정규모 : 100개사 (권역별 10~20개국 수준 균등 선정) ○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패키지 지원													
	구분	지원 사항												
	시장개척육성비	○ 지원항목 : 제품개발, 판촉, 상품화, 브랜딩, 시장조사, 마케팅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내에서 업체가 필요한 사업 선택 ○ 지원한도 : 30~50백만원 * 집행액의 80% / 성과별 한도 차등 / 대기업 지원한도 50%												
	시장개척로드쇼	○ 시장개척비(항공, 숙박, 바이어초청상담회, 시장조사 등) 지원 * 중소기업 100%, 대기업 50%												
	해외사무공간	○ (지원항목) 해외 aT사무소(오피스) 공간 지원 * 수출업체에서 직원파견 시 선승인 후 지원												
	청년인턴	○ (지원내용) 청년 해외개척단 매칭 1명 현지 시장개척 지원 (aT에서 선발 지원 후 수출업체에서 OJT교육 실시) -언어 능력 등이 우수한 청년 개척단의 현지 지원으로 수출효과 증대												
	* 특이사항 : 프런티어로 선정되면 시장다변화사업(바이어초청상담회 등) 전반에 공통 참여 또는 우선권 부여 ○ 사업의무액 : 지원액 2배 이상의 수출(입)액 (미달성시 달성비율에 따라 시장개척 육성비 지원한도 축소)													
선정기준	○ 계량평가(30점) : 목표국가 수출액, 신용도 등 ○ 비계량평가(70점) : 사업계획·시장개척가능성, 연속사업성 등 총괄 평가 * '16년 시장다변화사업 참여/기여도/성실도(중도포기자) 등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 적용													
진행절차	<table><tr><td>당해년도 사업자 모집 (1월)</td><td>▶</td><td>당해년도 사업자 선정(2월)</td><td>▶</td><td>사업이행 약정서 제출</td><td>▶</td><td>중간점검 (추가 사업자 선정 등 실시/5월)</td><td>▶</td><td>최종결과보고 (결과평가, 정산/10월)</td></tr></table>					당해년도 사업자 모집 (1월)	▶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2월)	▶	사업이행 약정서 제출	▶	중간점검 (추가 사업자 선정 등 실시/5월)	▶	최종결과보고 (결과평가, 정산/10월)
당해년도 사업자 모집 (1월)	▶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2월)	▶	사업이행 약정서 제출	▶	중간점검 (추가 사업자 선정 등 실시/5월)	▶	최종결과보고 (결과평가, 정산/10월)						
모집시기	○ '17. 1월 내 ~ 2월 중 / 약 1개월													
신청방법	○ 모집시기 : 연초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문의처	○ aT 시장다변화부 서권재 과장(cinbobseo@at.or.kr) 이혜원 대리(hwe120121@at.or.kr)													



24. Global K-Food Fair 통합마케팅을 통한 시장개척 지원

개요	○ 해외 주요시장의 권역별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농식품 수출업체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한 거래확대 및 수출확대 견인 ○ 수출시장별 미성숙시장 및 개척시장은 현지 소비자 대상 한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체험행사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시식체험, 판매 및 홍보 등의 통합마케팅을 통한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분 조성		
지원대상	○ 농식품수출업체		
지원내용	개최계획	7개국 7회(미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프랑스)	
	수출업체	- 수출상담회(수출상담액 및 현장계약 제고) : 행사장 임차 및 장치, 바이어 모집 · 수출상담(통역포함) 지원 - 소비자체험행사(소비자 반응조사 및 제품개선을 위한 테스트 등) : 참가품목 마켓테스트 등을 위한 장소 임차 및 부스장치, 통역 지원 등 - 운송비 : 업체당 100만원~ 200만원(권역별 차등)한도 내 지원	
	바이어	- 수출상담회(수출상담액 및 현장계약 제고) : 항공 및 숙박비용 지원 - 소비자체험행사 : 한국농식품 홍보 판촉 등 성과중심 행사 · 한국농식품 판매 및 홍보 부스 지원	
지원절차	수출업체 모집공고 ▶ 참가업체 신청 ▶ 바이어 모집·매칭 ▶ 수출 상담회 개최 * 소비자체험행사는 수출업체 또는 현지 한국식품 바이어 참가가능토록 지원		
이용방법	○ 모집시기 : 2~3월중에 모집 공고 ○ 참가신청 : 공사홈페이지(http://www.at.or.kr)를 통한 지원신청(추후 공고) ○ 선정기준 : 개최국별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확대 가능성 고려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 : 2018년 7개국 7회 개최 - 해외 수출국 현지에서 직접적인 수출상담회 개최로 수출확대 추진 ○ 계획 - 개최국별 30~50여개 수출업체가 참여하여 개최국가 및 인근국가 바이어 초청 상담 개최 * 세부추진계획 확정 후 사업진행 예정		
담당부서	○ aT 아태수출부 이승훈 차장(061-931-0962)		

25. 해외판촉행사 지원

개요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 통해 한국 농수산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지원대상	- 국내 수출업체 및 수출관련 협회,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 단, 국내 수출업체는 현지 입점판매 등 거래관계가 있고 행사추진이 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 해외 소비지에서의 판촉마케팅 활동관련 제반비용 - 임차비, 입점수수료, 판촉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임차 및 설치비용 - 행사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등 판촉관련 행사 및 제품 홍보관련 집행 비용 - 판촉행사 관련 홍보요원 고용비, 시식품비 및 시식관련 소모품비 등 ※ 새로운 유통채널 특성상 상기 이외 비용지원이 필요할 경우 aT와 사전 협의 - 판촉사업 지원신청시 제출한 수출목표액을 사업의무액으로 부여 - 사업의무액을 미달성 할 경우, 달성비율(%)에 따라 최종 정산지급액 감액				
지원기준	- 지원한도이내 행사관련 실제집행비용의 80% 지원 - 행사규모(매장 수, 행사지역 등)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조정 가능 - 수출선도조직, 단체 및 협회는 자부담 10%, 100백만원 한도 적용 가능 - 단,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발생비용의 50%만 지원 가능 ※ 인삼, 김치, 유자차, 삼계탕 및 신선부류 등 수출전략 품목은 지원한도이내 행사관련 실제집행비용의 90% 지원				
선정기준	- 계량평가(50점) : 수출목표액, 수출추이, 관련서류(카탈로그, 인증서 보유여부) 등 - 비계량평가(50점) : 행사계획 및 품목·국가별 수출확대 가능성, 수입업체(바이어) 규모 등 종합평가 * 전년도 aT 판촉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는 감점 적용				
진행절차	익년도 상반기 사업자 모집 (11월) ▶ 익년도 상반기 사업자 선정 (12월) ▶ 사업이행 계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 ▶ 당해년도 하반기 사업자 모집 (5월) ▶ 당해년도 하반기 사업자 선정(6월) ▶ 사업이행 계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				
모집시기	'18년도 하반기 국내공모 판촉사업자 공고 및 선정 예정(5~6월 중)				
신청방법	- 모집시기 : 매년 5월, 11월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문의처	- aT 식품수출부 성국경 차장(061-931-0841) - 홍장우 대리(061-931-0846) - 한다솔 대리(061-931-0847)				



26.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개 요	- 농가소득과 연계성이 높은 농식품을 대상으로 품목별 맞춤형 마케팅 개발을 통한 대중국 수출 대표품목으로 육성 - 중국 내륙 시장 집중 개척을 통한 수출 규모화
지원대상	- 대중국 수출전략품목(10개) 수출업체, 수입바이어 등 * 10개 품목 : 인삼, 화훼, 유자차, 유제품, 쌀·쌀가공품, 삼계탕, 포도, 김치, 장류, 국산가공식품(면류, 전통주)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인삼) 인삼 신수요 창출을 위한 뉴미디어 활용 인삼 홍보 (화훼) 수출 가능 화훼 품목 인지도 제고 마케팅 (유자차) 중국 음료 프랜차이즈 연계 메뉴 판촉, 품질인증마크 획득 유자차 수출업체 지원 (유제품) 국산 조제분유 브랜드 마케팅, 온라인 사이트 연계 판촉 (쌀, 쌀가공품) 수출상품화 패키지 지원, 쌀·쌀가공품 홍보 판촉 (삼계탕) 고급 유통매장 연계 삼계탕 홍보, 현지 기업체 연계 마케팅 (포도) 프리미엄 포도 매장 연계 판촉, 신선식품 온라인 전용몰 홍보판촉 (김치) 고유문화 접목 홍보 마케팅, 대형유통매장연계 홍보판촉 (장류) 농가소득 연계성이 높은 국산가공식품 홍보판촉 (면류, 전통주) 팝업스토어 운영 및 브랜드별 마케팅 (신비즈니스) 민간 주도적 농식품 수출분야 새로운 수출모델 발굴 및 지원 - 대중국 수출용 신상품 개발, 현지 네트워크 연계 시장개척 등
사업별 추진계획	품목별 추진계획 수립 ⇒ 업체 선정 ⇒ 사업 실행 ⇒ 정산
선정방법	- 신비즈니스 사업 선정절차 : 사업공모 → 1차 평가(계량+비계량) → 2차 평가(PT발표) → 최종선정 및 사업수행 -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선정기준 : 최종 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상기 모집방식은 사업공고시 변동가능
신청방법	공모사업 진행시 www.at.or.kr, www.kati.net, global.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담당부서	- aT 중국수출부 고정희 차장(061-931-0981) - aT 중국수출부 김성진 대리(061-931-0983)

27. 바이어매칭 모바일웹 운영

개 요	해외 수입바이어 및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MD에게 신규·유망 한국농식품 상품정보 실시간 제공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지원내용	- 기업 및 상품정보 중·영문 번역 - 중·영문 상품페이지 제작 - 상품페이지 업로드 및 콘텐츠 관리
추진절차	수출지원시스템 지원 신청 ➤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상품 업로드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3개 품목
선정기준	(일반 업체) 품목제조보고서 보고일자가 '16.1.1이후인 상품 (6차산업인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보유 업체 - 해당 국가에 수출된 적 없는 신규상품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방법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상품세부정보표, 사업자등록증,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등 - 기타사항 : 상품별 사진 최소 5장 제출
문의처	aT 중국수출부 이단비 차장(061-931-0982), 박민희 사원(061-931-0986)



〈참고 : 연락처〉

○ aT 국내 지역본부

지역본부명	주 소	연 락 처
서울경기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 업무동 6층	TEL 02-820-2300 FAX 02-813-7183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 (정석빌딩 신관)	TEL 032-888-6162~3 FAX 032-888-6164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6층	TEL 033-920-1547 FAX 033-647-0063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TEL 043-902-9523 FAX 043-266-2458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TEL 042-488-8542~3 FAX 042-488-8546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6층 601호	TEL 063-904-5921~4 FAX 063-211-7820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한국감정원빌딩 1층)	TEL 062-940-7006 FAX 062-944-2624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TEL 053-741-5221~3 FAX 053-741-5224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20층)	TEL 051-644-1401~4 FAX 051-644-1440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TEL 055-274-8300 FAX 055-274-4810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노형동 현대해상빌딩 10층)	TEL 064-746-9472 FAX 064-746-9473

○ aT 해외지사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중 국 지 역 본 부	베이징 지사	603 Room, Block A, Fairmont Tower No.33 Guangshun North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2, China (100102 中國 北京市 朝阳区 广顺北大街 33号院 1号楼 1单元 6层 603室)	E-Mail beijingat@at.or.kr TEL 86-10-6410-6120 FAX 86-10-6410-6122
	상하이 지사	Room 3201, New Hongqiao Central Plaza No.83, LouShanGuan R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0336, China (200336 中國 上海市 長寧區 崑山關路 83號 新虹橋中心大厦 3201室)	E-Mail shanghaiat@at.or.kr TEL 86-21-3256-6325~7 FAX 86-21-3256-6328
	청두 지사	2003 Room, Chengdu Ping An fortune Center No.1, Section 3, Renmin South Road, Wuhou District, Chengdu, Sichuan Province, 610041 P.R.C. China (中国四川省成都市武侯区人民南路三段一号成都平安财富中心 610041)	E-Mail chengdu@at.or.kr TEL 86-28-8283-3376/86 FAX 86-28-8283-3396
	홍콩 지사	Room 705, 7F Jubilee Centre, 18 Fenwick Street, 46 Gloucester Rd, Wanchai, Hong Kong	E-Mail hkcatcenter@at.or.kr TEL 852-2588-1614/16 FAX 852-2588-1919
	칭다오 aT물류 유한공사	Qingdao aT logistics Co., Ltd West Shuangyuan Rd., Liuting Street, Chengyang, Qingdao, China (青岛市 城阳区 流亭街道 双元路 西 青岛爱特物流有限公司)	E-Mail qingdao_logistics@at.or.kr TEL 86-532-6696-2229 FAX 86-532-6696-2181
도쿄지사		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 Shinjuku-ku, Tokyo, 160-0004, Japan (東京都新宿区四谷4-4-10 KOREA CENTER 5F)	E-Mail tokyo@at.or.kr TEL 81-3-5367-6656, 6693~94 FAX 81-3-5367-6657
오사카지사		8F, Nomura Fudousan Osaka Bldg. 1-8-15, Azuchimachi, Chuou-Ku, Osaka, 541-0052, Japan (大阪市 中央区 安土町 1-8-15, 野村不動産大阪B/D 8F)	E-Mail osaka@at.or.kr TEL 81-6-6260-7661 FAX 81-6-6260-7663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자카르타지사	The Energy Building 20th FL, Zone F, SCBD Lot.11A JL.Jende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E-Mail jakarta@at.or.kr TEL 62-21-2995-9032~3 FAX 62-21-2995-9034
하노이지사	#1213, 12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72 Tower, Plot E6, Pham Hung Str., South Tu Liem Dist., Ha Noi., Viet Nam	E-Mail hanoi@at.or.kr TEL 84-4-6282-2987 FAX 84-4-6282-2989
방콕사무소	#2102 Level 21, Interchange 21, 339 Sukhumvit Road, North Klongtoey,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E-Mail bangkok@at.or.kr TEL 66-2611-2627~9(내선 12) FAX 66-2611-2626
로스앤젤레스 지사	12750 Center Court Drive South, #255, Cerritos, CA 90703, USA	E-Mail losangeles@at.or.kr TEL 1-562-809-8810 FAX 1-562-809-1191
뉴욕지사	111 Great Neck Rd, Suite 208, Great Neck, NY 11021, USA	E-Mail newyork@at.or.kr TEL 1-516-829-1633 FAX 1-516-829-6521
파리지사	Korea Agro-Trade Center, 89 Rue du Gouverneur Général Eboué (1er etage), 92130, Issy-les-moulineaux, France	E-Mail paris@at.or.kr TEL 33-1-4108-6076 FAX 33-1-4108-2016
두바이지사	Jumeirah Beach Road (Kite Beach), Jumeirah 3 - Dubai, UAE	E-Mail dubai@at.or.kr TEL 971-4-330-7333